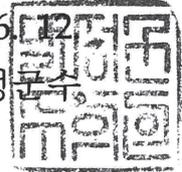


#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안 번호	1341
----------	------

제출일자 : 2016. 12. 22  
제출자 : 달성군수



## □ 제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2절 제3호

## □ 제출사유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2장 제2절 제3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 보고 내용

- 2016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된 시설
-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우선해제시설)
- 2014년 군의회 제232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 보고
- 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35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856개소
- 금회 의회보고 대상인 2016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263개소, 우선해제시설은 46개소, 2014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 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558개소

(2016.12.31.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시설								집행율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미집행전체		10년미만		10년도래		10년이상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계		3,036	13,215,626	2,180	9,595,572	856	3,620,054	61	486,040	263	407,013	795	3,134,014	72.6
도로	소계	2,405	5,433,172	1,639	4,166,659	766	1,266,513	52	58,130	200	353,495	714	1,208,383	76.7
	중로	295	1,980,546	271	1,814,161	24	166,385	3	16,495	-	-	21	149,890	91.6
	소로	2,110	3,452,626	1,368	2,352,498	742	1,100,128	49	41,635	200	353,495	693	1,058,493	68.1
주차장	노외주차장	94	152,656	63	133,636	31	19,020	3	850	27	15,870	28	18,170	87.5
공원	소계	94	220,236	58	130,404	36	89,832	3	47,182	27	27,740	33	42,650	59.2
	어린이공원	70	148,928	55	119,948	15	28,980	-	-	9	14,070	15	28,980	80.5
	소공원	22	24,488	3	10,456	19	14,032	1	362	18	13,670	18	13,670	42.7
	문화공원	2	46,820	-	-	2	46,820	2	46,820	-	-	-	-	0.0
녹지	소계	189	3,253,062	168	1,342,071	21	1,910,991	2	46,783	9	9,908	19	1,864,208	41.3
	완충녹지	130	3,014,118	109	1,103,127	21	1,910,991	2	46,783	9	9,908	19	1,864,208	36.6
	경관녹지	49	144,424	49	144,424	-	-	-	-	-	-	-	-	100.0
	연결녹지	10	94,520	10	94,520	-	-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3	1,397,545	2	1,064,450	1	333,095	1	333,095	-	-	-	-	76.2
학교	초등학교	44	602,936	43	602,333	1	603	-	-	-	-	1	603	99.9
기타시설	기타시설	207	2,156,019	207	2,156,019	-	-	-	-	-	-	-	-	100.0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m <sup>2</sup> )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795	3,134,014	
	도 로	합 계	714	1,208,383	
		중 로	21	149,890	
		소 로	693	1,058,493	
	주차장	노외주차장	28	18,170	
	공 원	합 계	33	42,650	
		어린이공원	15	28,980	
		소공원	18	13,670	
	녹 지	완충녹지	19	1,864,208	
	학 교	초등학교	1	603	

### ○ 2016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m <sup>2</sup> )	비 고
2016년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	총 계		263	407,013	'06. 10.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 제 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 로	소 로	200	353,495	
	주차장	노외주차장	27	15,870	
	공 원	합 계	27	27,740	
		어린이공원	9	14,070	
		소공원	18	13,670	
	녹 지	완충녹지	9	9,908	

### ○ 우선해제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m <sup>2</sup> )	비 고
우선해제시설 (폐지)	총 계		46	29,557	
	도 로	합 계	43	20,634	
		중 로	-	-	
		소 로	43	20,634	
	녹 지	완충녹지	2	8,320	
	학 교	초등학교	1	603	

※ 도로, 녹지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 예정(주민의견청취 중 2016.11.30.까지)

※ 초등학교 1개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해제 추진 중

- 2014년 보고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m <sup>2</sup> )	비 고
2014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	총 계		558	2,853,847	
	도 로	합 계	510	906,812	
		중 로	20	141,979	
		소 로	490	764,833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300	
	공 원	합 계	36	89,832	
		어린이공원	6	14,910	
	녹 지	완충녹지	10	1,854,300	
학 교	초등학교	1	603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55개소(군비 854, 국·시비 1)

※ 초등학교 1개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해제

- 군 비

(단위 : 천m<sup>2</sup>, 억원)

구 분	합 계			2017~2019(1단계)			2020 이후(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54	3,286	7,842	111	235	663	743	3,051	7,179
도로	766	1,267	5,391	91	191	532	675	1,075	4,858
주차장	31	19	72	1	2	19	30	17	53
공원	36	90	195	19	42	112	17	48	83
녹지	21	1,911	2,184	0	0	0	21	1,911	2,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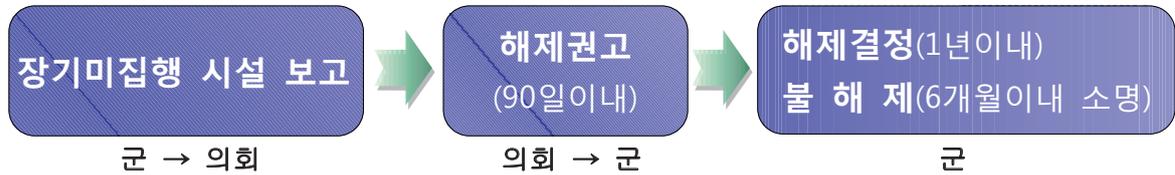
- 국비 및 시비

(단위 : 천m<sup>2</sup>, 억원)

구 분	합 계			2017~2019(1단계)			2020 이후(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구시설	1	333	3,763	1	92	1,041	1	241	2,722

## 참고 1 **의회보고 절차 및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



### ○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 참고 2 **관계법령 등**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4항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

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제3장 해제 기준

####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 (3)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붙임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서(별첨)**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별첨)**